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7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민형배・이재관・이상식

김태년 • 박홍근 • 이성윤

김원이 • 이수진 • 이기헌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을 타인에게 몰래 먹인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퐁당마약'이 자주 벌어집니다. 마약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살인·강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투약 당한 피해자를 치료보호할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퐁당마약'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의4 및 제59조).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9조제3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약류 검출 여부를 판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를 하려면 제40조제4항에 따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를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 중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0조의4(마약투약피해자의 치
	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제59조제3항
	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
	하여 마약류 검출 여부를 판별
	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u>받게 할 수 있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치료보
	호를 하려면 제40조제4항에 따
	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9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4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
	위 중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

-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생략)

- 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u>③</u>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u>④</u>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